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54
----------	-------

발의연월일 : 2025. 11. 18.

발 의 자 : 최혁진 · 정혜경 · 김우영
윤종오 · 김준혁 · 김용민
김재원 · 박홍배 · 정준호
권칠승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감사나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국외 파견근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국외에 파견근무하게 하기 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78조의5 신설 등).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4제1항 중 “이 조”를 “이 조 및 제78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7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5(국외 파견근무 전 징계사유의 확인 등) ①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국외로 파견근무하게 하기 전에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및 제78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소속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제78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국외로 파견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이하 <u>이 조</u> 에서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① ----- ----- ----- ----- ----- ----- ----- <u>이 조 및 제78조의5</u> ----- -----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u>한정한다</u>) 제78조제4항에 따른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	② ----- ----- ----- ----- ----- ----- ----- ----- <u>한정한다. 이하 같다</u> ----- -----

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1. ~ 4. (생략)

③ ~ ⑤ (생략)

<신설>

-----.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8조의5(국외 파견근무 전 징
계사유의 확인 등) ① 국가기
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국외
로 파견근무하게 하기 전에 제
78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및 제78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
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소
속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
유가 있거나 제78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기관의 장은 해당 공
무원을 국외로 파견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